#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6 발의연월일: 2020. 7. 1.

발 의 자: 강훈식ㆍ이용빈ㆍ김홍걸

김병기 · 진성준 · 신동근

김민석 · 김종민 · 기동민

백혜런ㆍ허 영ㆍ김윤덕

박성준 • 김경만 • 이용선

이장섭 · 김영호 · 김원이

의원(18인)

### 제안이유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 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 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6항 신설).

나.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기에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88조제 2항 등). 법률 제 호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규제자유특구 관할 구역 내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 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이하 "입 주기업"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87조제1항 중 "제86조제4항에"를 "제86조제4항 및 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6조제6항에"를 "제86조제7항에" 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책임보험에"를 각각 "책임보험 등에"로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제86조제4항의"를 "제86조제4항 및 제5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6조제8항에"를 "제86조제9항에"로 한다.

제90조제6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

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에"를 각각 "제5항및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에"를 각각 "제9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본문중 "제11항에"를 "제12항에"로, "책임보험에"를 "책임보험 등에"로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책임보험에"를 "책임보험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까지에서"를 "제14항까지에서"로 한다.

⑥ 입주기업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1조제1항제2호 중 "제90조제6항의"를 "제90조제7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90조제5항에"를 "제90조제5항 및 제6항에"로 한다.

제143조제1항제2호 중 "책임보험에"를 "책임보험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90조제6항에"를 "제90조제7항에"로 하며, 같 은 항 제4호 중 "제90조제12항을"을 "제90조제13항을"로, "책임보 험에"를 "책임보험 등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④ (생 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규제자유특구 관할 구역 내 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은 제4항 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 ⑤ ~ ⑧ (생 략) 항까지와 같음)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 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제86조제4항 및 제5항에-----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의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공동으 로 관리·감독한다.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④ ---제86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제86조제7항에-----

의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기 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 되면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 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신속한 정비에 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⑤ ~ ⑨ (생 략)

-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7 (생 략)
  - ②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와 별도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2
②
② <u>책임보험</u> 등에
② <u>책임보험</u> 등에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① 규제 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실 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실증특례의 적용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생략)
  - 제86조제4항의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
  - 3. <u>제86조제8항에</u>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경우
  - 4. 5. (생략)
  - ②·③ (생 략)
-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안전 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

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 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시·도 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 며, 해당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생략)

①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u>제8항에</u>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 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 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u>제8항에</u>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 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 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 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 장되는 것으로 본다.

① · ① (생 략)

<u>⑧</u> <u>제5</u>
<u>항 및 제6항에</u>
<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
<u> </u>
<u>제9항에</u>
제9항에
① · ② (현행 제10항 및 제11 항과 같음)

②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1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 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 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 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와의 별 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 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 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

### ① (생략)

④ 제1항부터 <u>제13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규제 저 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취소를신청할수 있다. 다만, 제1호

<u>③</u>
제12항에
<u>책임보험 등에</u>
<u>책임보험 등에</u>
<u>④</u> (현행 제13항과 같음)
<u>⑤</u> <u>제14항까지에서</u>
    91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91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91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91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생략)
- 제90조제6항의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 3. 4. (생략)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0 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 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자 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 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 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 는 해당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제143조(과태료) 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u>책</u>

 1. (현행과 같음) 2. <u>제90조제7항의</u>
3.·4. (현행과 같음) ② <u>제90</u>
<u>조제5항 및 제6항에</u>
 ③ (현행과 같음) 제143조(과태료) ①

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 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 한 자

- 3. 제90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9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 4. 제90조제12항을 위반하여 책 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 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 한 자

② (생 략)

	<u>임보험 등에</u>
3.	제90조제7항에
4.	제90조제13항을
	책임보험 등에
2	) (현행과 같음)